

임실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2025-3호

임실군의회 이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월 9일

임실군의회 의장



1. 개정이유

「임실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자전거도로의 정의와 자전거도로의 설치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 촉진과 효율적인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7호)

- 자전거도로 정의 신설

나. 조항 신설(안 제6조)

- 자전거도로의 설치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5년 1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1) 주 소: (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의회(의회사무과)

2) 전 화: 063-640-2883, 팩스 063-640-2699

3) 전자우편: charity81@korea.kr

4. 개정안: 붙임

임실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자전거도로”란 법 제3조에 따른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제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자전거도로의 설치) ① 군수는 왕복 4차선 이상 도로의 신설 시 자전거도로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도로의 경사로 인하여 자전거이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2. 도로교통관계법령에 의하여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될 경우
3. 제반 여건상 군수가 자전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인 경우
4. 법령상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국가(지방)산업단지, 재건축·재개발 지역, 주거환경 개선지역의 일주 도로 및 내부 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건설 방안을 설계 시 검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전거도로 설치 시 학교, 공공기관, 산업단지 입주업체, 대형 쇼핑센터 등과의 연계방안을 설계 시 검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통학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건설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u><신설></u> <u><신설></u>	제2조(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7. “자전거도로”란 법 제3조에 따른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제6조(자전거도로의 설치) ① 군수는 왕복 4차선 이상 도로의 신설 시 자전거도로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도로의 경사로 인하여 자전거이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2. 도로교통관계법령에 의하여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될 경우 3. 제반 여건상 군수가 자전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인 경우 4. 법령상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국가(지방)산업단지, 재건축·재개발 지역, 주거환경 개선 지역의 일주 도로 및 내부 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건설 방안을 설계 시 검토할 수 있다.

<u>제6조 ~ 제18조</u> (생략)	③ <u>군수는 자전거도로 설치 시 학교, 공공기관, 산업단지 입주업체, 대형 쇼핑센터 등과의 연계방안을 설계 시 검토할 수 있다.</u> ④ <u>군수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통학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건설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u> <u>제7조 ~ 제19조</u> (현행 제6조부터 제18조까지와 같음)
-------------------------------	---

임실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이성재 의원

관련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등”이라 한다)만通行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등 외에 보행자도通行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등만通行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通行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通行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通行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제7조(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지정·고시된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설치한 자전거도로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 1. 28.]